

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088
----------	------

2025년 9월 2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년 8월 11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5년 8월 14일

다. 상정일자: 제33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9월 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[제안 설명자: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]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수상레포츠 교육·체험, 레저선박 계류·보관, 편의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한강 내 최초 친수기반 복합시설로서,
-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,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위탁사무명: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운영
- 시설개요
 - 시 설 명: 서울수상레포츠센터
 - 소 재 지: 서울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일대(난지한강공원)

- 시설규모: 연면적 1226.9㎡(계류장 면적 제외)

구 분	규 모	주요기능	 <시설 전경>
복합지원센터 (수상구조물)	(1층) 611.4㎡	교육 및 편의시설	
	(2층) 615.5㎡ / 옥상	휴게공간 및 전망시설	
계 류 장	(수상) 2,600㎡	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보관·계류	
	(육상) 5,000㎡		

- 추진경위: 조성공사 준공('24.2.29.), 센터 운영개시('25.5.1.)

· 운영관리 용역: '25.4.9.~'26.2.8.

- 위탁기간: 2026.2.1.~2029.1.31. (3년)

- '26년 예산요구(안): 398백만원

- 위탁사무

-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수상 및 육상 계류시설 운영
-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물 유지·관리
- 그 밖에 홍보 및 행사 등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- 수탁기관 선정방법: 공개모집 (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)
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보관·계류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이해 및 기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자격 및 역량이 필요한 사업으로,
- 용역의 경우 매년 신규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선정기간(약 2개월) 동안 공백이 발생하는 등 장기·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어려움을 고려하여,
- 운영사무 수행방식을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(위탁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호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나. 예산조치: '26년 예산 편성필요

다. 합 의: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(적정)

2)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

- 본 동의안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를 2026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난 6월 추진계획(신규)이 수립되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‘적정’ 심의 후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음.
-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천수기반 복합시설로서 수상·육상계류시설⁴⁾ 운영,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, 수상레저기구 조작 및 정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다루고 있는 만큼 안정적·지속적 서비스 제공,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관련 자격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동 시설은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공공시설로서 당초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, 수익 창출을 계획했으나, 접근성과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설 준공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실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일관성 결여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을 것임.

- 한편,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, 위탁사무 내용, 위탁시설 개요,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규정⁵⁾하고 있으나, 본 동의안에는 위치도와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.

4) 한강 내 계류시설(총 354선석) 중 61% 차지

시 설 명	위 치	계류시설	비 고
서울수상레포츠센터	마포구 상암동	216선석	61.0%
서울마리나	영등포구 여의도동	90선석	25.4%
파라다이스	영등포구 여의도동	8선석	2.3%
로얄마리나	서초구 잠원동	25선석	7.1%
현대요트	서초구 반포동	15선석	4.2%

5) 제4조4(민간위탁 동의안)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,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, 3. 위탁사무 내용,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, 5. 민간위탁기간, 6. 수탁자 선정방식,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, 8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, 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3) 민간위탁금 검토

- 본 민간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이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시설형 위탁 방식⁶⁾으로 운영되며, 민간위탁금은 지출액 5억 5천2백만원에서 수입액 1억 9천만원을 상계한 3억 9천8백만원을 편성할 계획임(붙임1. 민간위탁금 세부 산출내역(p.7)).

세부적으로 지출액 중 인건비⁷⁾가 3억 7천8백만원으로 지출액의 68%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시설보험료·복리후생비·소모품비·감가상각비 등 운영비로 1억 3천7백만원을 산출하고 있는 등 인건비 중심의 구조 속에서 운영 안정성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필수 비용이 적절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.

수입액은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계류장 및 프로그램 이용료로 약 1억 9천만원을 추정하고 있으며, 수입액 변동 가능성에 대응하여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증가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위탁비 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다만, 시설형 위탁 방식은 수탁자의 적극적인 수익 확보 노력에 따라 시설 활성화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, 수익 중심의 운영이나 비용 절감으로 인해 위탁 사무의 품질 저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6) 서울수상레포츠허브 운영관리 원가분석 용역('25.05. KITI)에서 운영 방식 및 이용료 수입 귀속 주체를 분석하여 시설형 위탁 방식으로 선정(수입 감소시에도 별도의 재정지원 없음).

7) 총인원 10명 = 센터장(1명) + 팀장(2명) + 시설관리(2명) + 시설미화(1명) + 운영강사(4명)
운영강사 인건비는 6개월만 산정

붙임1
민간위탁금 세부 산출내역(398백만원)

항 목	내 역	금 액(원)	산출내역(원)
인건비	기본급	246,950,316	센 터 장 : 3,013,171원×1명×12월 = 36,158,052원 팀 장 : 2,794,530원×2명×12월 = 67,068,720원 시설관리 : 2,592,401원×2명×12월 = 62,217,624원 시설미화 : 1,791,586원×1명×12월 = 21,499,032원 운영강사 : 2,500,287원×4명× 6월 = 60,006,888원
	제수당	77,448,144	휴일근로수당 : 휴일근로시간×시급×150%×10명 = 22,348,000원 연차수당 : 기준단가×7일 or 3일×10명 = 5,710,000원 주휴수당 : 기본급×20%×10명 = 49,390,000원
	퇴직충당금	20,457,096	퇴직충당금 : (기본급+제수당)/12×6명 = 20,457,096원 ※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(4명)는 퇴직충당금 산정 제외
	보험료	33,354,350	국민연금 : (기본급+제수당)×4.5% = 14,597,930원 건강보험 : (기본급+제수당)×3.545% = 11,499,926원 고용보험 : (기본급+제수당)×1.15% = 3,730,584원 산재보험 : (기본급+제수당)×0.86% = 2,141,030원 장기요양 : (상주 기본급+제수당)×12.95% = 1,489,240원 임금채권 : (상주 기본급+제수당)×0.06% = 194,640원
소 계		378,058,906	
운영비	시설보험료	16,008,500	마리나업배상책임보험 : 12,960,000원 영업배상책임보험 : 2,773,000원 수상레저보험 : 243,000원 승강기배상책임보험 : 32,500원
	복리후생비	18,660,000	피복비 : 217,000원×6명+117,000원×4명 = 1,770,000원 식대 : 8,000원×22일×(12개월×6명+6개월×4명) = 16,896,000원
	도서인쇄비	1,283,000	브로슈어 : 186,455원×2세트 = 372,910원 전단 : 72,545원×2세트 = 145,090원 현수막 : 39,000원×15개 = 585,000원 자료인쇄 : 50원×3,600매 = 180,000원
	광고선전비	18,228,000	브랜드 광고 : 15,000,000원×1회 = 15,000,000원 라디오 광고 : 161,400원×20회 = 3,228,000원
	수리선전비	7,207,418	시설물 수리수선 : 600,623원×12월 = 7,207,481원
	지급수수료	10,838,650	무인보안시스템 : 400,000원×12월 = 4,800,000원 법정의무 및 친절교육 : 1,800,000원×1회 = 1,800,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: 123,700원×12월 = 1,484,400원 승강기유지관리 대행수수료 : 140,000원×12월 = 1,680,000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: 211,300원×1회/2년 = 105,650원 승강기 정기검사 : 133,600원×1회 = 133,600원 전화 : 15,000원×12월×2회선 = 360,000원 인터넷 : 39,500원×12월 = 474,000원

항 목	내 역	금 액(원)	산출내역(원)
	소모품비	8,984,048	락스 : 6,800원×12개 = 81,600원 비누 : 1,500원×120개 = 180,000원 화장지 : 32,500원×12팩 = 390,000원 마포대 : 9,800원×2개 = 19,600원 변기솔 : 4,810원×6개 = 28,860원 종량제봉투 : 1,880원×183개 = 343,100원 빗자루 : 7,700원×2개 = 15,400원 쓰레받이 : 4,400원×2개 = 8,800원 고무장갑 : 3,300원×12개 = 39,600원 손소독제 : 7,500원×12개 = 90,000원 유류대 : 1,610.5원×3000L = 4,831,500원 코팅장갑 : 6,000원×12개 = 72,000원 입장객 손목띠 : 63.6원×20,000개 = 1,272,000원 유흡착재 : 113,636원×3개 = 340,908원 abc분말소화기(3.3kg) : 26,000원×3개 = 78,000원 abc분말소화기(10kg) : 167,000원×1개 = 167,000원 유처리제 : 28,636원×5개 = 143,180원 기타소모품비 : 1,000,000원×1식 = 1,000,000원
	지급임차료	1,297,092	복합기 : 60,000원×12월×1대 = 720,000원 정수기 : 48091원×12월×1대 = 577,092원
	여비교통비	300,000	관내여비 : 25,000원×12회 = 300,000원
	감가상각비	50,670,961	카약(1인승) : 518,181원×10대÷10년 = 518,181원 카약(2인승) : 800,000원×10대÷10년 = 800,000원 킬보트 : 42,727,272원×6대÷10년 = 25,636,363원 덩기요트 : 7,363,636원×8대÷6년 = 9,818,181원 폰톤 : 64,000원×800개÷6년 = 8,533,333원 구명조끼 : 40,000원×50개÷6년 = 333,333원 고무보트 : 10,036,364원×3대÷7년 = 4,301,298원 구명환 : 48,000원×10개÷6년 = 80,000원 사무용PC : 1,158,182원×2대÷5년 = 463,272원 책상 : 297,000원×2개÷9년 = 66,000원 의자 : 217,800원×5개÷9년 = 121,000원
	안전보건관리비	3,569,255	안전보건관리 : 344,855,556원×1.035% = 3,569,255원
소 계		137,051,987	
일반관리비		10,311,217	- 소요예산(인건비+운영비)의 2%
이윤		26,293,605	- {소요예산(인건비+운영비) + 일반관리비}의 5%
총지출		552,165,715	소요예산+일반관리비+이윤
총수입		189,921,610	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 : 57,723,904원 계류장 이용료 수입 : 132,197,706원
총원가		362,244,105	총지출-총수입
부가가치세		36,224,410	- 총원가의 10%
합계(백원 이하 절사)		398,468,000	

※ 일반관리비율 2.0%, 이윤율 5.0% 적용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8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수상레포츠 교육·체험, 레저선박
계류·보관, 편의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한강 내 최초
친수기반 복합시설로서,

나.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, 민간위탁을
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운영

나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수상레포츠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일대 (난지한강공원)
- 시설규모 : 연면적 1226.9㎡(계류장 면적 제외)

구 분	규 모	주요기능	
복합지원센터 (수상구조물)	(1층) 611.4㎡	교육 및 편의시설	
	(2층) 615.5㎡ / 옥상	휴게공간 및 전망시설	
계 류 장	(수상) 2,600㎡	선박 및 수상레저기구	
	(육상) 5,000㎡	보관·계류	
< 시설 전경 >			

<시설 전경>

- 추진경위 : 조성공사 준공('24. 2. 29.), 센터 운영개시('25. 5. 1.)

- 운영관리 용역 : '25. 4. 9. ~ '26. 2. 8.

다. 위탁기간 : 2026. 2. 1. ~ 2029. 1. 31. (3년)

라. '26년 예산요구(안) : 398백만원

마. 위탁사무

-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수상 및 육상 계류시설 운영
-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물 유지·관리
- 그 밖에 홍보 및 행사 등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)

사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보관·계류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이해 및 기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자격 및 역량이 필요한 사업으로,
- 용역의 경우 매년 신규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선정기간(약 2개월) 동안 공백이 발생하는 등 장기·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어려움을 고려하여,
- 운영사무 수행방식을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(위탁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3호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나. 예산조치 : '26년 예산 편성필요

다. 합 의 :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(적정)

※ 작성자 :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안전부 수상운영과 강수영 (☎ 3780-0594)